

대구지방법원 2024. 12. 5 선고 2024가단382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론 종결 2024. 11. 21.

판결 선고 2024. 12. 5.

## 주 문

-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88. 12. 8. 접수 제289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,
  - 피고 B는 1/2 지분에 대한,
  - 피고 C는 3/22 지분에 대한,
  - 피고 D, H, I은 각 1/11 지분에 대한,
  - 피고 E은 3/77 지분에 대한,
  - 피고 F, G는 각 2/77 지분에 대한
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자백간주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김경수

별지

1) 원고의 2024. 6. 13.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피고 I의 지분 부분이 '14/54'로 기재되어 있으나, 이는 '14/154'의 착오기재로 보인다.